

폭염(온열질환) 예방조치 안내

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입니다!

폭염작업이란?

체감온도 31℃ 이상인 작업장에서
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- ✓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장소에서 측정
(바닥에서 약 1.2~1.5m 높이)
- ✓ 냉방기 바로 앞,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제외

체감온도 측정 방법



체감온도

31℃

이상

작업 시 적용

체감온도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조치

체감온도 31℃ 이상

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 실시



냉방 또는
통풍장치 설치·가동



작업시간 조정



적절한 휴식시간 부여



체감온도 측정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·보관
(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)

체감온도 33℃ 이상

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



20분 이상 휴식



휴식이 어려운 경우,
아래 조치 중 하나 실시

- ✓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
- ✓ 작업 강도 완화
- ✓ 체온 상승을
줄일 수 있는
대체조치 실시



작업특성상 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
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 필수

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



시원하고 깨끗한
음용수 제공



소금· 전해질
보충



휴식할 수 있는
휴게시설 제공



응급조치
교육 실시



건강장애 발생 시
즉시 119 신고



온열질환 예방계획
수립 및 실행

온열질환 주요 증상

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!

어지러움

두통

구토



심한 갈증

근육경련

의식저하



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져
생명에 위협을 수 있습니다!

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사항

- ✗ 체감온도 측정기 미비치
- ✗ 체감온도 기록 미작성
- ✗ 휴식시간 미부여
- ✗ 휴게시설 부족
- ✗ 생수만 제공하고 전해질 미제공
- ✗ 근로자 교육 미실시

체감온도 확인 방법 (참고)

기상청 '폭염영향예보' 또는 'WBGT' 값을 참고하여
작업장 체감온도 예측 및 대비가 가능합니다.



기상청 날씨누리
(www.weather.go.kr)



기상청 폭염영향예보
(WBGT) 확인



“ 폭염은 예방이 최선입니다.
사업주의 작은 실천이
근로자의 생명을 지킵니다. ”



관련 법령 (2025. 7. 17. 기준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(사업주의 의무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(온도·습도 조절 등)
- 제561조(환기장치의 설치 등)
- 제562조(폭염작업 시 예방조치)
- 제564조(다중장애 예방조치)
- 제566조(휴식 등)
- 제567조(휴게시설의 설치)
- 제570조(세척시설 등)
- 제571조(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)